

나의 중재부장일지 - 평범한 조정이 명판결보다 낫다

이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7중재부장

판사로 임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을 재판업무를 하면서 커리어를 쌓게 된다. 재판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의 특성상 외부 기관과 교류가 거의 없다. 따라서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운영 원리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소 피상적으로 외부인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판사는 법원의 운영방식이나 조직체계가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하리라 짐작하게 된다. 지금도 거의 모든 판사들은 조직으로서는 법원만 알고 지낼 것이다.

필자 역시 그러한 평범한 판사의 하나였다. 법관으로 23년을 근무하면서 재판이 아닌 업무로 선거관리위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공보관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보다 경험의 폭과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행운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있을 때만 잠깐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사법연수원 교수나 공보관도 재판이 아닐 뿐 법원 내부의 업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비재판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던 중 202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장으로 재판을 하면서 1년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울제7중재부장을 겸직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고 표현한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원과 전혀 다른 조직체계와 역할 분담을 경험하였다. 법원을 구성하는 조직원으로 법관과 직원이 있다.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처도 있고 각급 법원에도 총무과가 있어서 이런저런 행사도 준비하고 연말정산도 도와주고 매달 월급도 지급해 주고 있다. 대부분은 법원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직원의 역할이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법원에서 업무의 꽃, 고갱이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정경위가 각자의 일을 처리한다. 참여관은 그날그날 재판에서 어떤 준비서면이 진술되었는지 ‘변론조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실무관은 당사자에 대한 송달 업무와 서류접수 등을 맡는다. 속기사는 증언을 녹취하고 법정경위는 보안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의 주장 내용은 무엇인지, 사실관계의 주장이 엇갈릴 때 실제적 진실은 무엇인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판례 법리는 무엇이 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의 포섭 작용을 통한 최종적인 결론으로 무엇이 올바른지,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어떤 형량으로 정할 것인지 등등 모든 실제적인 판단은 오로지 판사의 몫이다. 흔히 일반 기업이나 행정부에서는 임원급이나 관리자는 ‘결재’를 하는 게 업무이다. 그래서 부장판사면 아래에서 작성해 온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니냐, 시간 여유가 좀 있지 않냐는 말을 친구들로부터 듣는다. 그럴 때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법원은 위로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지는 구조야.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기록을 모두 직접 읽어야 해.”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듣는 상대방은 변명이나 엄살로 듣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상 외롭게 기록을 보고 증거를 하나하나 대조해 보는 작업은 어쩔 수 없이 판사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다. 판사들은 직원이 전달해 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읽고 메모부터 시작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청구원인은 제대로 되었는지, 증거서류의 내용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는지 한 땀 한 땀 누비를 하듯이 모든 작업을 스스로 해 내야 한다. 이 메모를 하는 과정에 엄청난 시간을 투입한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법원에서의 조정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언론조정신청서를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조정기일을 앞두고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사건요약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사건명, 당사자, 보도내용, 각자의 주장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받은 것이다. 심지어 관련 판례까지 적혀 있었다. ‘어라, 이건 뭐지.’ 법원에서라면 직원은 당사자로부터 서류를 접수 받아 판사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 그치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은 기초적인 사안의 정리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의견 형태로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제안까지 제시해 준 것이었다. 판사들이 작성하는 ‘메모’보다 더 체계적이고 내용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조정위원들이 접수된 사건의 언론보도가 정정 대상인지 반론이 필

요한 사안인지 ‘판단’ 작용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법원 판사들끼리 모였을 때 이 경험(정확히는 충격과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우리 법원도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고, 점점 전문화, 다양화되는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식을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판사들은 으레 과거의 개인적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이 일하는 조직도 최고의 조직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물 안 개구리 마냥 바깥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법원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와야 한다는 주장을 1년 내내 하고 다녔다.

둘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대체로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다룬다. 이른바 흘러간 과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게 사법작용의 본질이다. 한국전쟁 당시의 양민학살 사건, 유신시대 과거사 사건처럼 70년 전의 사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취득시효 사건에서는 20년 전의 토지를 누가 점유했는지,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였는지를 다룬다. 필자는 2022년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어느 대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을 검토하였는데 그 일이 발생한 것은 2010년도쯤이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고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도의 일이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각 근로자들이 서로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은 누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문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는 새로운 업무패턴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다룬다. 판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판례 법리를 형성하는 대법원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과거의 일을 다룬다. 아무리 빨라도 3~4년 전의 과거에 일어난 일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역사는 반복되므로,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고 사법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눈 앞에 놓인 사건은 한참 전의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AI와 휴머노이드를 논의하는데 그런 사회현상이 재판으로 오려면 앞으로 수년은 더 걸릴 것이고, 판사들은 당장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바로 엇그제 일어난 사건이나 지난주에 뉴스에서 보았던 사안이 조정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OO신문사에서 “A 피자 회사가 여성에게는 가맹점을 못 내게 하고 미혼 여성이 창업 상담을 하면 남자친구와 공동 명의로 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가맹점주를 상대로 비싼 원재료를 구매하도록 과도하게 강제하였다”라고 보도한 사건이 서울제7중재부에 배당되었다. 실제로 이 보도를 읽은 기억이 생생한 때였다. A 피자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



당했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악덕업체로 낙인이 찍혀 여성 고객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추락하였다고 호소를 하면서 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을 한 것이다. 특히 해당 기사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계속 노출이 되어 “저런 기업은 망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악플에 시달리게 되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관이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고, 언론인 출신과 변호사 중재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어 반론보도 형태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회사의 입장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절차를 마무리지었고, 현재 시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살아 있는’ 사안을 즉석에서 해결하였다는 자부심이 절로 생겼다.

셋째,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는지 실감을 하게 되었다. 소송 아닌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는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이 있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법률전문가인 판사로부터 명확한 결론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너무 엄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일도양단의 방식이라 제3의 해결책을 도모하기 어렵다. 소송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률비용도 훨씬 많이 소요된다. 그에 반하여 조정이나 중재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



중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기존의 실체법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 시민의 감각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조정 절차가 이용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절차진행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중재부는 절차진행의 전문성을 가진 현직 부장판사인 중재부장과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내부의 생리와 속성을 꿰뚫고 있는 중재위원에 더하여 변호사 출신 중재위원으로 조화를 이루어 조정절차를 주관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조정의 장점이 발휘된 사안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OO주간지는 “모 홈쇼핑업체가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데 납품업체에게 특정 택배회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그 택배회사를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비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만약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홈쇼핑업체만이 아니라 택배회사 역시 거액의 횡령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고, 기업 관계자는 실형을 면치 못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홈쇼핑업체는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택배회사 역시 내부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혼란이 초래되었다. 조사관의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토대로 언론보도에 오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중재위원들의 열띤 설득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기업이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만약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려고 하였다면 관련 형사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일이 안 잡히고 한없이 늘어지거나 지연적인 세부 사실을 확인하느라 1년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기업은 자신의 억울함을 불과 1개월도 안 걸려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다. 언론사는 만약 소송으로 번져서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했을 터인데 그러한 위험부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언론중재위원 경험을 통해 업무적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같은 중재부 중재위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생경험도 배울 수 있는 번외 소득까지 얻을 수 있었다. 동료 법관들에게 언론중재위원이 꼭 되어 보시라고 강력 추천한다. 🍀